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의결권 행사 지침

제정 2024. 7. 23.

제1조[목적]

이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의결권 행사 지침(이하 “이 지침”이라 한다)은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스틱” 또는 “당사”) 및 스틱이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이하 총칭하여 “투자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스틱의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함에 있어서,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 제87조 및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9조에 의거하여, 스틱의 투자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여 고객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의무]

- ① 당사 및 투자 펀드는 투자대상회사의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당사 및 투자 펀드는 출자자 및 투자 펀드 수익자의 장기적 투자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조[범위]

당사와 당사의 투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업지배구조 원칙]

- ① 당사와 당사의 투자 펀드는 경영권 참여 및 의결권 행사에 있어 투자대상회사가 다음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회사는 주주에게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마.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법령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자.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회사 및 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당사는 ESG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ESG 고려사항 통합 시 제1항 각호의 원칙이 투자 대상회사에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제1항 각호의 원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ESG위원회(또는 해당하는 경우 펀드ESG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결권 행사]

- ① 당사는 장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③ 당사는 주주총회 전 투자대상회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주주총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④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제4조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당사는 출자자, 투자 펀드,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하 “ESG”)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ESG위원회(또는 해당하는 경우 펀드ESG위원회)는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스틱 또는 투자 펀드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7조[기록의 보관]

스티크은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정 및 개정]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사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 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다.

<별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p>1. 재무제표의 승인</p> <p>(1)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찬성하며, 재무제표의 진실성 및 감사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인지될 경우 반대한다.</p> <p>(2) 재무상황 및 계획, 경영목표 등에 비추어 적절한 배당에 찬성한다.</p>
<p>2. 정관 변경</p> <p>(1) 주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하며, 주주의 권익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식별될 경우 반대한다.</p> <p>(2)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하며,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한다.</p> <p>(3) 채무재조정 및 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자본조달의 구체적 계획, 경영권 관련 문제, 이해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p>
<p>3.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p> <p>(1) 이사 후보의 전문성 및 투자대상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p> <p>(2) 이사 후보가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반대한다.</p> <p>(3) 이사 및 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경우 선임을 반대한다.</p> <p>(4) 감사 및 감사위원 후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선임을 반대한다.</p>
<p>4. 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p> <p>(1) 일반적으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하며, 경영 목표에 비추어 제안된 보수 한도가 합리적인 설명 없이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반대를 검토한다.</p> <p>(2) 감사 절차에 심각한 우려가 인지될 경우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를 검토한다.</p>
<p>5. 기타</p> <p>(1)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p>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2) 주주제안은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피투자회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피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3) 안건에 대한 반대를 검토하는 경우, 투자대상회사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확인하여 판단한다.